

서울특별시 인베스트서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167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9년 10월 16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외국인 직접투자 타겟팅·유치·관리 업무를 전담하고 서울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투자유치 전담 창구 구축을 위해 '인베스트서울센터'를 운영할 계획임
- 나.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적정성 심의결과, '적정'으로 결정되어 「서울특별시 행정 사무의 민간위탁의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위탁사무명 : 인베스트서울센터 운영
- 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 - 민간위탁 추진근거
 -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제6조
 - 인베스트서울센터 조성계획(투자창업과-5787, '19. 5. 31.)
 - 인베스트서울센터 조성·운영계획(투자창업과-8940, '19. 8. 21.)
 - 추진 필요성
 - 외국인투자자 및 창업가와 소통하며 전문지식, 정보를 상시 제공하는 업무는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때 효율이 극대화되며 외국인투자 및 창업분야는 네트워크 활용이 중요한바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

다. 민간위탁 사무내용

- 외국인 비즈니스 행정서비스 종합지원
- 외국인직접투자 및 창업지원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서비스 제공
 - 시장분석, 법률·회계, 투자절차 지원제도 등 외국인 투자·창업 원스톱 지원
 - 해외투자자 탐색, 투자적격 기업 및 시설 현지 제공 등 해외 마케팅
 - 투자신고·법인설립·시설 중개 등 투자·창업 1:1대행 서비스 제공
 - 비자신청 지원, 은행·교통·통신·주거·교육 등 정착서비스 제공
 - 시설물 유지관리, 안전대책 수립 시행
- 외국인 창업지원 교육 및 무역아카데미 운영
- 인베스트서울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
- 기타 외국인 비즈니스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라. 민간위탁 개요

- 위 치 : 종로구 종로 38 서울글로벌센터 6층
- 규 모 : 337m²
- 시설개관 : '19. 12월 예정
- 구 성 : 헬프데스크, 전문상담실, 사무공간, 창업보육공간 등
- 운영방식
 - 정보제공 수준을 넘는 투자유치 밀착 서비스 제공
 - 신규투자 유치 및 기 진출한 외투기업의 증액 투자 유도
 - 글로벌비즈니스센터와 통합·운영을 통한 외국인 창업지원 기능 수행
- 소요예산 : 3,889백만원 ('20년 기준)
- 위탁기간 : '20. 1. 1. ~ '22. 12. 31.(3년)
- 수탁기관 선정방법 : 수의협약

마. 민간위탁운영평가 위원회 심의결과 : 적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인베스트서울센터 운영

-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제6조

제6조(외국인투자 유치사무의 위탁)

- ② 시장은 대규모투자사업 등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 필요한 사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가·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- 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- 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제4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)

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6. 산업지원, 직업훈련,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나. 예산조치 : '20년도 예산 편성 필요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투자창업과 투자환경개선팀 윤인석 (☎ 2133-4761)